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34
----------	-----

제안년월일 : 2022년 9월 28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2022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장의 제출한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5호)에 대해 제 314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22년 9월 28일)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정책 대상을 기존에 경력단절여성등에서 취업 여성으로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전부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지난 2022년 6월 8일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5호)에 포함되지 않은 조문의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인 바, 위원회 대안을 통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제명을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을 반영하여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정의규정에 경력단절여성등의 대상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신설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상위법을 반영하여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연도별 시행계획, 실태조사, 통계의 작성·관리의 범위를 상위법을 반영하여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5조의2).
- 경제활동촉진사업의 범위를 상위법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구직활동 및 고용촉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 경제활동촉진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3항 신설)
- 경제활동촉진사업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의2 신설).
- 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실시의 범위를 상위법을 반영하여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를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재취업 촉진활동”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자아실현”을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돌봄 등”을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일경험 지원 사업”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

력단절 예방”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를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을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으로 한다.

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

제5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을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경력단절여성등에”를 “여성의 경제활동에”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일경험 지원 사업

7. 구직·고용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8.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시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u></p>	<p><u>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u>」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u>경력단절여성 등의 재취업 촉진활동</u>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u>자아실현</u>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경력단절여성등</u>”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u>돌봄</u>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p> <p>2. (생략)</p> <p><u><신 설></u></p>	<p>제1조(목적) ----- 「<u>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u>」----- <u>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u>----- -- <u>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u>----- -----.</p> <p>제2조(정의) ----- ----- -----.</p> <p>1. ----- ----- ----- <u>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u>----- ----- ----- -----.</p> <p>2. (현행과 같음)</p> <p>3. “<u>경력단절 예방</u>”이란 여성이 <u>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u></p>

현행	개정안
<p>3. “<u>여성인턴십 프로그램</u>”이란 <u>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현장 적응력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직장체험 활동을 말한다.</u></p> <p>4. (생략)</p> <p>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u>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u>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u>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u>」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u>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u></p> <p>4. “<u>일경험 지원 사업</u>”이란 <u>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 등을 말한다.</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3조(시장의 책무) ----- ----- ----- ----- <u>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u>----- ----- -----.</p> <p>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u>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u>」 제5조----- ----- -----.</p> <p>② ----- -----.</p>

현행	개정안
<p>1. <u>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과 전망</u></p> <p>2. <u>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u></p> <p>3. <u>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주요 시책</u></p> <p>4. 그 밖에 <u>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p> <p>③ (생략)</p> <p>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u>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u>을 세우기 위하여 <u>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u>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p> <p>제5조의2(통계의 작성·관리)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u>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활용</u>하기 위하여 <u>경력단절여성등에 관한 통계</u>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p> <p>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시장은 <u>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u></p>	<p>1. <u>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u></p> <p>2. <u>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u></p> <p>3. ----- <u>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u> ----- -----</p> <p>4. ----- <u>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실태조사) ----- <u>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u> ----- <u>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u> ----- ----- -----.</p> <p>제5조의2(통계의 작성·관리) -- ----- ----- <u>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u>----- ----- <u>여성의 경제활동에</u> ----- -----.</p> <p>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① --- <u>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u></p>

현행	개정안
<p><u>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u></p> <p>1. ~ 4. (생략)</p> <p>5. <u>여성인턴십 프로그램 운영</u></p> <p>6. (생략)</p> <p><u><신설></u></p> <p>7.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사업</u></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절예방을</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일경험 지원 사업</u></p> <p>6. (현행과 같음)</p> <p>7. <u>구직·고용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원</u></p> <p>8. <u>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② <u>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③ <u>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u>제6조의2(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시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u></p>

현행	개정안
<p>제8조(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실시)</p> <p>① 시장은 <u>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u>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러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p> <p>제8조(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실시)</p> <p>① ----- <u>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기</u>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